



제 897 호

2009년 12월 1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차 례

훈 령

○훈령 제2009 -25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일상감사업무처리예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1

공 고

○공고 제2009 -1713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0
 ○공고 제2009 -1714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1
 ○공고 제2009 -1715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임시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12
 ○공고 제2009 -1716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3
 ○공고 제2009 -172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통보서 공시송달 14
 ○공고 제2009 -1723호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15
 ○공고 제2009 -172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6
 ○공고 제2009 -1731호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2
 ○공고 제2009 -173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23
 ○공고 제2009 -17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52
 ○공고 제2009 -173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77
 ○공고 제2009 -17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86
 ○공고 제2009 -1738호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 명단 90

고 시

○고시 제2009-5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림동 소2-20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1
 ○고시 제2009-5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논현동 중2-378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5
 ○고시 제2009-5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2지구내 소3-2, 소3-5, 소3-6호선) 실시계획인가고시 100
 ○고시 제2009-6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4

회 람								
--------	--	--	--	--	--	--	--	--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상감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18일

남동구 훈령 제25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일상감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일상감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일상감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5조의3 및 행정감사규정 제24조의2, 인천광역시일상감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13조,

「행정감사규정」 제24조의2 및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등에 따른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 등으로 한다.

1. 구 본청 및 직속기관
2. 출장소 및 동 주민센터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제3조(대상사업)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 공사비(보상비 제외)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기계 및 그 밖의 분야의 단위발주공사는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2. 설계용역 :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본·조사·연구 및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 감리용역 : 건설공사와 관련한 감리용역비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일상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3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받은 사업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사업 예산집행품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조경·전기·통신·기계 등”

을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은 시 감사관” 을
“매분기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대상사업 신청서

□ 사업(용역)명 :

사업목적			
공 사 비	○ 총공사비 : 완료 ┌ 도급액 천원 └ 관급액 천원 └ 보상비 천원	○ 재원구성 ┌ 국·시비 : 천원 │ (%)	└ 구 비 : 천원 (%)
사업개요 및 규모			
사업 (과업) 기간			
설 계 자	소속	직급(위)	성명
심 사 자	소속	직급(위)	성명
비 고			

□ 첨부 : 1. 과업지시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서

□ 사업(용역) 명 :

구 분	검토내용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관련규정

□ 기타사항

년 월 일

감사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결과 집행전말 보고서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요지	처 리 전 말	완결여부	비 고

※ 주의사항

1. 비교란에 처분요구에 따른 공사비 증감 표시
2. 지적사항에 따른 공사비 변경사항과 일상감사 후 변경사항을 분리하여 처리전말 보고
예)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감(-111,111원)되었으나 공사 물량을 조정하거나, 제비율을 조정하는 등으로 공사비를 증가(+111,111원)시켜 일상감사전과 동일한 공사비(증감 없음)로 조정하거나, 공사비를 오히려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경우, 처리전말보고서에는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111,111원)을 표시하고, 일상감사 후 변경사항은 변경항목별로 분리, 정리하여 보고
3.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처리전말 증빙자료 첨부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요지	처 리 전 말	완결 여부	비 고
1	공사원가계산서	산업안전관리비 과다계상	산업안전관리비 정정 당초 1,234,567원 변경 123,456원	완결	감 1,111,111원
2	일위대가	터파기 품 표준품셈 적용	터파기 품 조정 (보통인부 0.2인 → 0.5인) 당초 단가 1,000원 변경 단가 2,000원	완결	당초 터파기 공사비 1,000,000원 변경 터파기 공사비 2,000,000원 증 1,000,000원
계					감 111,111원
		포장면적 증가	당초 100㎡ 변경 110㎡		증 100,000원
		이윤 조정	당초 8% 변경 10%		증 11,111원
합계					증감없음(-원)

[별지 제5호 서식]

/4 분기 일상감사 처리결과

(기관명 :)

분 야 별	사업건수	행 정 상 조 치(건)				재 정 상 조 치(천원)			비 고
		계	시 정	개 선	권 고	계	감 액	보 류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 계									
전기공사									
조경공사									
기 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받은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적용범위 조정 (제2조)
- 일상감사 대상사업 조정 (제3조제1항)
- 일상감사 제외사업 규정 (제3조제2항)
-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1713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29조를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2009.12.14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9.12.14 ~ 2009.12.31

2. 공시송달내용

가. 제 목 : 과태료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나. 적용법률 : 지방세법제52조(공시송달)

다. 대상자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금액
1	25다8777	홍성오	만수동 17번지 주공아파트 502동 306호	80,000
2	18우1353	조범구	간석동 412번지 11호 남광빌라 B동 201호	165,000
3	인천80너 7972	조윤희	간석동 427번지 9호 201호	100,000
4	92나2621	박정혜	구월동 1213번지 28호 성하빌라 B동 102호	30,000
5	86소2801	신신익스 프레스 (연해용)	만수동 1105번지 12호	300,000
6	27더4262	전동성	간석동 938-1 어울림마을아파트 116동 2303호	60,000

3. 유의사항

가. 위 공고에 대하여 2009. 12. 31까지 과태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2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14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29조를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2009.12.14.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9.12.14 ~ 2009.12.30

2.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내용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명령

나. 적용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4조

다.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최후주소	원 인			
				차량번호	적발일시	적발장소	위반내용
조문숙	46****	원상복구명령 과태료 30,000	구월동1153-1 보라주택지2호	인천 35가7024	09.10.27 11:21	영동교 하상주차장	불법등화 (앞면안개등 파손)
정광진	69****	원상복구명령 과태료 100,000	만수동938번지1호	인천 80타7616	09.11.5 11:34	약대동 (가평식당앞)	뒤번호판 불인탈락

3. 유의사항

가.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2009.12.30.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2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임시검사명령서를 송달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09.12.14.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9.12.14 ~ 2009.12.31

2.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임시검사명령

나. 적용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다.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최후주소	원 인			
				차량번호	적발일시	적발장소	위반내용
김연순	52****	임시검사명령	남촌동488-11 궁전빌라11동401호	인천 81다5822	2009. 11. 11 15:27	청천동418-4 우성코러스앞	적재함 격벽제거(자동차관리법제34조)
서민철	79****	임시검사명령	만수동946-16 한샘다세대9동201호	인천 80마8382	2009. 11. 11 16:03	청천동415 동서식품앞	적재함 격벽제거(자동차관리법제34조)

가.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2009.12.31 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2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조장원 외 78건
- 공 고 기 간 : 2009. 12. 14. ~ 2009. 12. 31.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09년9월3회차)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 수취인 미거주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납기내 기간 2009. 12. 31일(납기후일자-2010. 2. 1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 -2925 ,292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또는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2009. 12. 31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가산금 징수 및 매 1개월마다 과태료의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 12. 17. ~ 2009. 12. 31.(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역

차량번호 (면허번호)	인천32바1474(제8160호)	택시자격증번호	95-04-09027
성명(대표자)	최인식	주민등록번호	(가) 600925-1*****
주 소	인천 남동구 간석동 2**-* 1층		
처분이유	○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취소일 : 2007.11.18.) ○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008644(2007.10.12) ○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812(2009.3.12. 심리불속행기각 : 중국)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별표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별표5		
처분일자	2009.12.03.		
행정처분내역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 택시운전자격 취소		
청구절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별표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별표5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7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조순영외 229건
- 공 고 기 간 : 2009. 12. 16. ~ 2009. 12. 31.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붙임내역과 상이한 경우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손해보험팀 (☎ 032-453-2925, 2926 FAX : 032-453-29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고기한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72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취지
 -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

3. 주요 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
- 남동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남동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7조제1항]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의결 방법의 구체화 [제7조제4항]
- 기타 경미한 맞춤법 및 문장부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전화 : 032-453-2312, FAX : 032-453-2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운영조례” 를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 운동 추진계획안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안전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 제11조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제4항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u>」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u>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u> <u>라 한다</u>)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 장한다. 1. 남동구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남동구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남동구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안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의 협의·조정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 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u>」 제11조에 의한 <u>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 원회</u> ----- -----.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 안 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 운동 추진계획안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 시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 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 ③ (생략)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 의 하 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서 신 설 >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u>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u>”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회의를 작 하 고</u>, ----- ----- 다만,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비변상조례」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731호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기 간 : 2009. 12. 17 ~ 2009. 12. 31
 - 공 고 대 상 : 송진희 외 10명
(붙임 “공고내역” 명단 참조)
 - 공 고 내 용 :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동법 제15조를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09. 12. 31 까지 남동구청 청소과(☎ 032-453-2555)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에는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부과일	등기발송 결과
송진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294	30,000	2009-12-03	수취인 부재
박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0-11	30,000	2009-12-03	이사 불명
허동진	경기도 시흥시 포동 36	100,000	2009-12-03	수취인 불명
전순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5-19	30,000	2009-12-03	수취인 부재
이원남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10-4	200,000	2009-12-03	수취인 부재
고애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142	30,000	2009-12-03	수취인 부재
오광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93-11	30,000	2009-12-03	수취인 부재
장영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52	30,000	2009-12-03	이사 불명
김운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70-1	100,000	2009-12-03	수취인 부재
이영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9-817	100,000	2009-12-03	수취인 부재
이선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2-11	30,000	2009-12-03	수취인 부재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3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
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2호(2009.08.24)】(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17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12. 17(목) ~ 2009. 12. 27(일)

2. 사업내용

논현 N CITY 주상복합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유호건설주식회사 유재하(☎02-2687-2118)

나. 설 계 자 : (주)에일건축사사무소 라재화
(☎ 032-461-0147)

다. 시 공 자 : 유호건설주식회사 유재하(☎02-2687-2118)

라.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24번지

○ 대지면적 : 9,658.00㎡

○ 연 면 적 : 94,376.1317㎡

- 공동주택(아파트) : 66,013.8792㎡

- 업무시설(오피스텔) : 26,837.0055㎡

- 근린생활시설 : 1,525.2470㎡

○ 규 모 : 주상복합 건축물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4층 지상39층 3개동 383세대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지하4층 지상18층 2개동 270실

○ 세 대 수 : 383세대

○ 공사기간 : 2010.01.08 ~ 2013.05.07(40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09.12.11

○ 착공예정일 : 2010.01.08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 187,415,475천원

○ 대 지 비 : 73,202,337천원

○ 총공사비 : 82,490,260천원(타법 포함)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72,076,789천원(부가가치세제외)

바. 복수예비가격

○대상공사비:72,076,789,000원

○감리요율 :2.36350785%

○산출방식 :감리대가97±3%

※ 부가가치세 미포함

① 1,703,540,566원

② 1,696,240,894원

③ 1,687,647,486원

④ 1,681,685,094원

⑤ 1,674,213,852원

⑥ 1,669,422,929원

⑦ 1,659,958,814원

⑧ 1,652,434,349원

⑨ 1,647,475,153원

⑩ 1,641,172,053원

⑪ 1,632,824,704원

⑫ 1,627,350,450원

⑬ 1,618,406,862원

⑭ 1,610,740,929원

⑮ 1,601,328,132원

※예정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 함

3. 공정계획서(사업주체 제출)

(아래 예정공정표에 의거하여 감리원 배치기간 표기할 것)

구분	년월	2010년												201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공정(40개월)																									
건축공사(40개월)																									
토목공사(20개월)																									
설비공사(33개월)																									

구분	년월	2012년												2013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전체공정																			2010.01.08~2013.05.07	
건축공사																			2010.01.08~2013.05.07	
토목공사																			1차 2010.01.08~2010.09.30 2차 2012.06.01~2013.05.07	
설비공사																			2010.08.01~2013.05.07	

4.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입찰서개봉 및 발표 ⇒ 예정
가격 추첨 ⇒ 예정가격 평균가 발표 ⇒ 순위(예비1~5순위)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5순위 선정은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 세부평가 함으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2(2009.08.24.)호 「주택건설공사 감
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가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
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
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
보는 없으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
음
- ④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
는 실시하지 않음
- ⑤ 만약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는 않을 경
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⑥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
정기준에 따름

5. 감리자 입찰 접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12. 28(월) (10:00~12:00) 우편접수 불가, 직접
접수에 한함

○ 장 소 : 남동구청 7층 소강당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동 1008번지))

- ※ 입찰접수 마감시간 내에 입찰접수장 사무실 내에 입실한 자
까지만 접수받음
- ※ 위임받은 자가 입찰 접수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직증명
서 및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대장에 기재사항
을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6. 예정가격 추첨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12. 28(월) 14:00 부터 ~
- 장 소 : 남동구청 2층 소강당(입찰 접수 장소와 같음)
- ※ 예정가격 추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중 당일 입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예정가격의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우리 청 홈페이지 (www.namdong.go.kr)
공고란에 게시 예정이며 순위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7.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09. 12. 29(화) ~ 2009. 12. 31(목)
(09:00~18:00 근무시간내만 가능)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출 불가)
- 사실확인 제출서류 : 12. 사실확인 제출서류 참조 할 것
-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
 3. 참여감리원(비평가, 신규 포함)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복사)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9. 12. 29(화) ~ 2010. 1. 5(화)
(09:00~18:00 근무시간내만 가능)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
- 열람방법 : 직접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대리권이 있는 자에 한하며,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받지 않음)
- 내 용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1호서식]
나.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다.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에 한함. (이의신청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 함)
※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자는 문서로만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
※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접수분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려 처리함
※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함

9.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52호)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52호) 제4조 제2항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 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로 함.(공고일 포함)

- 라. 지역가점 : 500세대 미만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2점) 부여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유동비율 : 181.76%

나. 평균자기자본비율 : 51.47%

- ※ 구비서류 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합니다.(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11. 입찰 접수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평가 및 비평가 대상 감리원 명단 기입)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3)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서식]
 - 밀봉 후 표지에 인감 날인하고 “감리비입찰서 및 감리회사명 등”을 명기 할 것
- (4) 감리원 배치계획서
- (5) 증빙자료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년간 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 위임 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철하여 제출할 것

12. 사실확인 제출서류(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본 공고문 붙임의 분야별 평가방법 및 [별첨 2], [별첨 3], [별첨 4]

(2)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별지 제4호 서식)

- 유의사항(재무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3)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 최근 1년간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 및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감리자모집공고 상의 세대수 관계없이 건축사업무신고필증에 기재된 건축사가 감리전문회사의 대표와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하고 있는 대표건축사 모두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제재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 비회원인 경우에는 [별첨 5] 양식으로 대체할 수있음) : 미제출시 구비서류 미비로 실격처리 하오니 각별히 주의바람

※ 건축사업무신고와 (종합)감리전문회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한국건설감리협회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구비서류 미비로 실격처리 하오니 각별히 주의바람

- (5)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해당자)
- (6) 업무중첩도 관련 :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 (7)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 (8) 교체빈도 : 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에서의 감리원 교체율 및 교체건수
- (9)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10)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11)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 감리원 포함)
 - 1)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2)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3)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4)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 5)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고 원본제출을 할 수 없는 증명서의 경우에는 사본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 토목, 기타설비), 신규감리원, 비상주 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5점)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합니다.

13. 유의사항

- (1) 사실확인 제출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 상기 “11 및 12” 항 접수 시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3)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14. 기타 유의사항

-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 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공고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및 입찰 금액이 아라비아숫자 금액과 한글표기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⑤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

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입찰일 이후 감리자로 지정된 자를 제외한 감리자지정신청자의 응모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에 의하여 2일간 반환(이후 폐기)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② 비평가대상(비상주 제외) 분야별 감리원의 배치는 1.건축, 2.토목, 3.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 배치되는 비평가 분야별 감리원부터는 건축, 토목, 설비분야 관계없이 배치할 수 있음.(단, 배치분야 관계없이 마지막 1명만 부분배치 가능함)
- ③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 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 ④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감리사보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 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 합니다.

아.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이 곤란한 경우 감리지정신청자에게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 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등)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 전체가 완료 되기전(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에 감리원

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 등을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 합니다.

- 차.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 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 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으로 사업비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파.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 하.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52호 (2009.08.24)]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 거.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6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처리 됨.
- 너.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의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더. 상기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별첨 2] 감리자 감리업무수행실적,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신규감리원의 배치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시고, [별첨 2, 3, 4]양식에 따라 감리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만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작성자의 실수로 [별첨 2, 3, 4]양식에 누락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공고부분에 게시하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1부
2.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1부
3. 주요공정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감리분야	접수번호
주택법감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

(사업명 : 논현 N CITY 주상복합 신축공사)

2009. 12. .

(회사명 기재)

1. 공사개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m ²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팩스번호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건축					
분야별	건축					
분야별	토목					
분야별	설비					
비상주	건축					
신규(1)						
신규(2)						
비평가(1)	건축		작성예시임			
비평가(2)	토목					
비평가(3)	설비					
비평가(4)	건축					
비평가(5)	토목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대해 주택건설공사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2009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5순위업체 해당)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회 사)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와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해당없음)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정상태 건 실 도	유동비율 자본비율	4 3			예) 00(%)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5			예) 100(억원)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1 1.5			예) 특허 0건 예) 00(%)
		투자실적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외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업무중첩도	적·부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예) 중복배치 없음
	감 <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mm × 297mm (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비 율 (%)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5호 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사 업 내 용	공 사 명	○○공사		사업승인일	20 년 월 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20 년 월 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사유로 인하여 현재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지**되고 있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2009년 월 일

○○시(도, 사·군·구)장 (인)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가서

			평 가 일		
용역명		감리전문회사		사업주체	
용역기간		대표자		시공사	
감리비		연락처		공사기간	
총괄감리원		업종		공사금액	
총세대수			감리자 지정통보일		
사용검사일			감리계약체결일		

구분		평가 항목	평정	
			만족	불만족
감리자		1) 조직상태		
		2) 감리업무지원 시스템		
		3) 감리원 기술교육		
감리원	총괄감리원	4) 근무성실도		
		5) 기술능력		
		6) 감리원 통솔능력		
	분야별감리원	7) 근무성실도		
		8) 기술능력		
		9) 검측 및 확인업무의 적정성		
	비상주감리원	10) 근무성실도		
		11) 기술능력		

□ 총평 : 만족(), 불만족()

○

○

※ 11개 항목중 7항목이상 만족인 경우 만족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만족, 불만족 여부를 우선 기재한 후, 총평란에 전체적인 평가를 요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년 ○월 ○일부로 완료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리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 및 평가자 : ○○사 대표이사
○○○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 분야별 평가방법(산출근거 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소계	5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50점 이내		
(1)재무상태 건 실 도	7			
산출근거		- 유동비율 평가(유동자산/유동부채 기재) (산출식 기재)		
		- 자본비율 평가(자기자본/총자산 기재) (산출식 기재)		
(2)감리업무 수행실적	15			
산출근거		역원 - 별첨2 참조		
(3)행정제재	10			
산출근거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산출근거		- 건설기술실적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교육훈련 가.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 = 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3 =		
(5)신규감리원 배 치	5			
산출근거		별첨4 참조		
(6)교체빈도	5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		
(7)감리업무 수행계획서	5			
산출근거		- 감리업무수행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8)가점 소계	(4)			
8-1.감리업무 수행결과 가산	(1)			
산출근거		- 만족비율 : 만족건수/전년도 전체평정건수 × 100 =		
8-2.지역가점	(2)			
산출근거				
8-3.설계용역 수행가산	(1)			
산출근거				
(9)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9-1.감 리 원 배치계획	적부			
산출근거				
9-2.업무중첩도	적부			
산출근거				

나. 감리원

나-1. 총괄 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1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1점 이내		
(1) 등 급	6			
산출근거				
(2) 경력 및 실 적	15			
산출근거		일(년) 별첨3 참조		
(3) 자격가점	(0.2)			
산출근거				
(4) 행정제재 감 점	(-2)			
산출근거				
(5) 교체빈도 감 점	(-1)			
산출근거				

나-2. 분야별 감리원

항 목	배 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4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분야별 감리원 각8점(24점) 이내		
(1) 등 급	6			
산출근거	2	- 건축 : 등급		
	2	- 토목 : 등급		
	2	- 기타설비 : 등급		
(2) 경력 및 실 적	18			
산출근거	6	- 건축 : 일(년) 별첨3 참조		
	6	- 토목 : 일(년) 별첨3 참조		
	6	- 기타설비: 일(년) 별첨3 참조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3)자격가점	(0.1) × 3				
산출근거	(0.1)	- 건축 : 자격사항			
	(0.1)	- 토목 : 자격사항			
	(0.1)	- 기타설비 : 자격사항			
(4)행정제재 감 점	(-1) × 3				
산출근거	(-1)	건 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토 목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기타설비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5)교체빈도	(-0.5) × 3				
산출근거	(-0.5)	- 건축 :			
	(-0.5)	- 토목 :			
	(-0.5)	- 기타설비 :			
나-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나-3. 비상주 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5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5점 이내			
(1)등 급	2				
산출근거		등급 :			
(2)경력 및 실적	3				
산출근거		일(년) 별첨3 참조			
(3)행정제재 감 점	(-1)				
산출근거		업무정지 등 기간	(월)		
		누 계 평 균 부 실 벌 점	(점)		
(4)교체빈도 감 점	(-1)				
산출근거		교체건수 : 상주(건) , 비상주 (건)			
나-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 비고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2(2009.08.2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고 제2009 - 호
- 사 업 명 : 논현 N CITY 주상복합 신축공사
- 사업주체 : 유호건설주식회사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9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2]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연 번	용역수행				적용 요율 (%)	환산금액
	용역명	감리기간	착공일	금액	공사중 류별 요율	
합 계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총 괄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명	분야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 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및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경 력 사 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 고
	사 업 명	기 간				
신 규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별첨 5]

행정제재 사실 확인 서약서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9- 호
 □ 사 업 명 : 논현 N CITY 주상복합 신축공사

본인은 상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대한건축사협회에 정회원이 아니므로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로부터 행정제재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제재 내용을 제출하며, 만일 아래 내용이 허위·거짓일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감리자(감리회사) 및 본인이 감리자지정신청금지 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아도 아무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행정제재기관	행정제재기간	제재근거	비고
예시)	행정제재 없음		
예시) ○○도지사	2008.1.1~12.31 12개월 업무정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2009년 월 일

서약자

감리자(감리회사) :

감리회사 주소 :

대표이사 건축사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51호(2009.03.23)】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1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12. 17(목) ~ 2009. 12. 27(일)

2. 사업내용

논현 N CITY 주상복합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유호건설주식회사 유재하(☎02-2687-2118) 나. 설 계 자 : (주)에일건축사사무소 라채화 (☎ 032-461-0147) 다. 시 공 자 : 유호건설주식회사 유재하(☎02-2687-2118) 라.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24번지 ○ 대지면적 : 9,658.00㎡ ○ 연 면 적 : 94,376.1317㎡ - 공동주택(아파트) : 66,013.8792㎡ - 업무시설(오피스텔) : 26,837.0055㎡ - 근린생활시설 : 1,525.2470㎡ ○ 규 모 : 주상복합 건축물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4층 지상39층 3개동 383세대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지하4층 지상18층 2개동 270실 ○ 세 대 수 : 383세대 ○ 공사기간 : 2010.01.08 ~ 2013.05.07(40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10.08.01 ~ 2013.05.07(33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09. 12. 11 ○ 착공예정일 : 2010.01.08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 187,415,475천원 ○ 대 지 비 : 73,202,337천원 ○ 총공사비 : 82,490,260천원(타법 포함) ○ 감리대상 전기공사비 : 4,388,853천원(부가가치세제외)	바. 복수예비가격 ○ 감리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 산출범위: 감리대가의 97±3 % ① 570,760,114원 ② 568,314,407원 ③ 565,435,242원 ④ 563,437,582원 ⑤ 560,934,391원 ⑥ 559,329,223원 ⑦ 556,158,334원 ⑧ 553,637,311원 ⑨ 551,975,765원 ⑩ 549,863,952원 ⑪ 547,067,228원 ⑫ 545,233,115원 ⑬ 542,236,624원 ⑭ 539,668,204원 ⑮ 536,514,507원 ※예정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공정계획서

○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예정공정표에 의거하여 감리원 배치기간 표기할 것)

구분 \ 년월	2010년												201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공정(40개월)																								
전기공사(33개월)																								

구분 \ 년월	2012년												2013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배치기간	
전체공정																		2010.01.08~2013.05.07	
전기공사																		2010.08.08~2013.05.07	

4. 감리자 입찰 접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12. 28(월) 10:00~12:00 우편접수 불가, 직접접수에 한함

○ 장 소 : 남동구청 7층 소강당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동 1008번지))

※ 입찰접수 마감시간 내에 입찰접수장(소강당) 내에 입실한 자까지만 접수받음

※ 위임받은 자가 입찰 접수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대장에 기재사항을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5. 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12. 28(월) 14:00 부터 추첨(건축 이후 전기감리자 추첨으로 다소 지연 예정)

○ 장 소 : 남동구청 7층 소강당(입찰 접수 장소와 같음)

※ 예정가격추첨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중 당일 입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예정가격의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우리 청 홈페이지 (www.namdong.go.kr) 공고란에 게시 예정이며 순위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 기 간 : 2009. 12. 29(화) ~ 2009. 12. 31(목) (09:00~18:00 근무시간내만 가능)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출 불가)

○ 사실확인 제출서류 : 10. 응모서류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참조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선정신청서, 자기평가표, 참여감리원(비평가, 신규포함)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 할 것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9. 12. 29(화) ~ 2010. 1. 5(화)
(09:00~18:00 근무시간내만 가능)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
- 열람방법 : 직접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대리권이 있는 자에 한하며,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받지 않음)
- 내 용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나. 자기평가서[별지 제 7호서식]
다.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에 한함. (이의신청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자는 문서로만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
※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함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감리업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 수행가능.
(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감리원 법정배치인원(참고하여 배치 바람)

구 분	책임 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비 고
		평 가	비평가		
논현 N CITY 주상복합	1인	-	-	1인	※ 복합건축물임으로 유의 - 공동주택 : 383세대 - 공동주택의 건축물(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연면적 : 28,362.2525㎡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 별표 2의2에 의거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 평가는 만점처리 함

-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9.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 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유동비율 : 151.56%

나. 평균자기자본비율 : 45.21%

- ※ 구비서류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합니다.(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10. 입찰 접수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입찰시)

- 1) 감리업자선정 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2) 감리비입찰서- 신청서 제출시에 입찰서도 제출하되, 입찰서는 별도 이중봉투에 봉인후 실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전기분야 표기, 대상사업명, 감리회사명 표기

- 3)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 5) 감리배치계획표 1부 - 별첨양식 작성·제출
- 6) 감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3)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4) 업무중첩도 관련 감리지정권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감리원 「응모자격제한시점」 참조

- 5)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 6) 작업계획 및 기법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작성 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 7) 서약서
- 8)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별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 9) 그밖에 평가서류(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등)
 - ※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여 제출 할 것.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내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10)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한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별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 PQ평가시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

우 모두 합산

㊤ PQ입찰 서류 제출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 하고 허위 기재시 탈락 처리함

마)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참여감리원 란에는 비평가감리원도 기재 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함[비평가는 보조감리원(비평가)로 표기 요망]

바)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해당업체에 한함)

사)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아)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시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만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작성자의 실수로 [별첨 1, 2]양식에서 누락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1(2009.3.23)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동기준 제3조 제3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 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낙찰자결정 및 감리업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입찰서 개봉 및 발표 ⇒ 예정가격 추첨 ⇒ 예정가격 평균가 발표 ⇒ 순위(예비1~5순위)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5순위 선정은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 세부평가 함으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다.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라.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 제외되고 제10조의3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 하며, 제10조의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마.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바.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2.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등

- 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나. 공고번호 기준 1개사가 2건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입찰금액이 아라비아 숫자금액과 한글표기 금액이 다른 경우 포함)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와 서류접수 등 록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사용인감계 제출 시에는 제외)
- 마. 담합 또는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13. 기타사항

-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나. 응모서류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합니다.
-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

료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 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교육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마. 8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 가점 가산(1.5)을 합니다.

바.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및 감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자로 감리업자를 선정하며, 부정행위 감리업자는 부정행위일부터 1년간 5점을 감점함.

사. 감리비입찰서는 비밀유지를 위해 이중봉투로 밀봉하고, 접합부에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응모번호, 사업주체, 감리자 상호를 기재한다.

아.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 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자.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차.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카.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 합니다.

타.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파.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교환 또는 수정할 수 없고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거.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적 합		부 적 합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평가 기준	내용	문 제 점	적 합		부 적 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3쪽 내외	2쪽 미만	-			-

구 분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적 합		부 적 합			
점 수			수	우	미	양	가	
			3	2.7	2.4	2.1	1.8	0
평가 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 합		부 적 합			－
		배치계획	적 합		부 적 합			－
	쪽 수		12쪽내외	10쪽미만	5쪽 미만			－

※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1호(2009. 3.23))에 따릅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http://namdong.go.kr>) 공고부분에 게시하고,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1부
2.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1부
3. 주요공정계획서 1부

감리분야	접수번호
전기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 지정 신청
(사업명 : 논현 N CITY 주상복합 신축공사)

2009. 12. .

(회사명 기재)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 리 업 자 선 정 신 청 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2009-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m ²		
설계업자	대표자		상 호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 송)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조(비평가)	작성예시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뒤 쪽 참고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 리 업 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작업계획및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 리 원	①등급/책임감리 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교 체빈도·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I. 총괄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평점	평가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 건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충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1.5	가. 지 역		1.5		
	1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5	다. 부실벌점		-5		
합 계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며,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0” 점 처리하고, 과소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가는 기재하지 말 것. 이하 같음

[별지 제8호 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 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 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 ÷ B (%)	기술개발투자실적 (전기부문)		총매출액 (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3차년	
		2차년		2차년	
		1차년		1차년	

3. 검토기준

-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 세부평가방법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공고문에 따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평점	평가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감리원	(1) 등급	[25] (-) (25)			
	(2) 경력 및 실적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 별첨1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14] (-) (14)			
	(2)경력및실적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 별첨1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11] (2) (9)			
	(2)경력및실적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별첨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 실 적	-	(10)			
	산출근거		○ 연면적 : m ² ※ 산출근거-별첨2		
3. 신용도		[10]			
가. 입찰 참가 제한 、 영업 정지	(1) 감리업체	(4)			
	(2) 참여감리원	(3)			
	산출근거		(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나. 재정 상태 건실도	(1) 자본비율	(1.0)			
	(2) 유동비율	(2.0)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2) 유동비율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 실적	-	(4)			
	-	(4)			
나. 기술 개발 투자 실적	-	(2)			
	산출근거		가. 개발실적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다. 교육 실적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 감리원	-	(6)			
나. 비상주 감리원	-	(4)			
산출근거			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6. 교체빈도		[5]			
가. 감리 업체	-	(2,5)			
나. 참여 감리원	-	(2,5)			
산출근거			가. 감리업체 :		
			나. 참여감리원 :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 행계획	-	(3)			
나. 작업 기법	-	(2)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 업 기 법 :		
8. 가점 및 감점		[2,5] [-5]			
가. 가점	(1) 지역 (2)책 임 감리원	(1,5) (1)			
산출근거			(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나. 감점	부실벌점	(-5)			
산출근거			○ 부실벌점 :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책임감리원							
	[부표 3-1] 가목 + 나목 + 다목 소계				일년		
	[부표 3-1] 라목 소계				일년		
	합 계				일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보 조 감 리 원							
	합 계				일 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비 상 주 감 리 원							
	[부표 3-1] 가목 + 나목 + 다목 소계				일 년		
	[부표 3-1] 라목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별첨 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용역명	감리 기간	공사 기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 산 연 면 적 (㎡)	평가
				주거시설	주거시설 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지 참고서식]

감리원 배치 계획표

용역명 : 논현동 66-24번지 논현 N CITY 주상복합 신축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전기공사기간 : 2010. . . ~ 20 . . (개월간)

[illegible]

※ 위 표는 감리원별 배치기간 작성예시로서 책임, 보조, 비상주 배치인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업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고 제2009- 호
- 사 업 명 : 논현 N CITY 주상복합 신축공사
- 사업주체 : 유호건설주식회사

본 업체는 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공고한 위 사업에 대하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 기재 및 부실(착오. 오기)한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감리업자 선정 취소 및 행정처분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9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3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남동타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
년 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문화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88

☎ : 032)453-2150, FAX : 032)453-2139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5. 붙 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 남동타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생활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입장료 등의 감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조)

- 입장료 및 사용료의 전부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입장료 및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비영리 공공기관 주관 행사
- 입장료 5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이상 장애인동반 보호자 1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 노인

○ 입장권 판매 및 징수 방법 (안 제3조)

○ 입장 및 퇴장 시간을 09:00~22:00로 명시함 (안 제4조)

○ 전시장 대관시 사용시간을 09:00~21:00로 명시함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료 등 감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입장료 및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하나만 적용한다.

1. 입장료 및 사용료의 전부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2. 입장료 및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입장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제3조(입장권)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인, 단체별로 구분하여 발행

한다. 다만 전산발매 입장권은 도안, 색채, 규격, 입장료 금액 표시방법 등을 수탁관리자가 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입장권은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 및 퇴장) ① 입장 및 퇴장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매표와 입장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2. 퇴장시간 : 22:00까지
- ② 제1항의 입장·퇴장 및 매표시간은 필요시 이를 수탁관리자가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시장 사용)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한 전망대 시설을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 ② 전시장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전시장 사용시간은 전시 내용에 따라 수탁관리자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장 권 양 식 # 1 (개 인)

9 cm	전면	
	전면 도안은 남동타워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함.	절 취 선
	15 cm	4 cm

후면	
우 편 엽 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우 표	₩
□ □ □ - □ □ □	
수신인 _____	
□ □ □ - □ □ □	
발신인 _____	
남 동 타 위 입 장 권	남동타워 입 장 권

*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입장권은 도안의 색채로 구별하고
절취선에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입장료 금액을 표시함.

입 장 권 양 식 # 2 (단 체)

5 cm	번 호 남동타워 단체 입장권 (어린이, 청소년, 성인) 1. 단체명 2. 입장료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번 호 남동타워 단체 입장권 (어린이, 청소년, 성인) 1. 단체명 2. 입장료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6 cm	6 cm

어린이
(청소년)의 구별은 색채로 한다.
성 인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수영장의 효율적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문화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88

☎ : 032)453-2150, FAX : 032)453-2139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남동수영장의 효율적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공익(공용) 또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
2.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제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38호

공 고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 위촉 명단

성 명	분 야	소속 및 직위	위촉일
윤교혁	보건복지지역분과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	2009. 12. 16

2009. 12. 1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9 - 5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림동 소2-20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도림2지구 연결도로(소2-20호선) 확포장 공사】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до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93), 건설과(☎032-453-27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12.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3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소2-20호선)
 - (2) 명 칭 : 도림2지구 연결도로(소2-20호선) 확포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원(B)=8m, 연장(L)=462.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 당 초 : 2009. 05. 08 ~ 2009. 12. 31
 - 변 경 : 2009. 05. 08 ~ 201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편 입 용 지 조 서

남동구 도림동

(도림2지구연결도로확포장공사)

번 호	소 개 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잔여면 적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도림동	400-4	도	35	35	0		인천광역시청				
2	도림동	400-5	전	45	45	0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53-8	배정환				
3	도림동	403-2	전	96	96	0	남동구논현동563-3논현주공 apt205-1503	강 순 식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563-3	국민은 행	근저당	
4	도림동	617	도	27,868	219	27,649		진교부				
5	도림동	402-7	임	441	441	0	인천 간석동 76-19	고 태 복				
6	도림동	402-10	임	399	399	0	인천 남구 주안동 1454-40	김 진 열				
7	도림동	402-12	임	135	135	0	남동구 논현동 111-91	이 영 준				
8	도림동	402-8	임	40	40	0	도림동 95-1	정 명 환				
9	도림동	산65-5	임	1,807	1,807	0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1	이 문 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 력	임차권	
10	도림동	418-7	답	455	455	0	도림동 439	이 문 주				
11	도림동	430-6	답	12	12	0	도림동 439	이 문 주				
소 계				31,333	3,684	27,649						

지 장 물 조 서

[illegible]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9-5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논현동 중2-378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입도로(중2-378호선) 개설공사】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93), 건설과(☎032-453-27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12.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중2-378호선)
 - (2) 명 칭 :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입도로(중2-378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원(B)=15m, 연장(L)=327.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 초 : 2009. 03. 27 ~ 2009. 12. 31
 - 변 경 : 2009. 03. 27 ~ 201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용 지 조 서 (1)

고지 지번	동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잔여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로 내	도로 외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논현동	66-73	임	216.0	216.0		0.0		인천광역시			
2	논현동	33-157	도	2,578.0	44.4		2,533.6		국(건설부)			
3	논현동	33-227	잡	80.0	80.0		0.0		인천광역시			
4	논현동	33-75	도	4,667.0	389.0		4,278.0		국(건설부)			
5	논현동	66-8	도	334.0	189.8		144.2		국(건설부)			
6	논현동	66-11	도	21,931.0	34.0		21,897.0		국(건설부)			
7	논현동	66-9	제	36.0	36.0		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35	주식회사성담			
8	논현동	66-10	제	1,964.0	1,964.0		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36	주식회사성담			
9	논현동	66-72	잡	1,491.0	1,491.0		0.0	서울시 서초구 빽배동 999-2 현대빌딩 201호	김중희외2인			
10	논현동	66-71	제	32.0	32.0		0.0		국(건설부)			
11	논현동	미등록지			320.0							
12	논현동	미등록지			66.5							
합	계			33,329.0	4,862.7		28,466.3					

지 장 물 조 사 서

1. 조 서 번 호 : 1

2. 소 재 지 번 : 공영수원

3. 소 유 자 :

주 소 :

전화 번호 :

4. 위 치 도 :

5. 물건내역

번호	종 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건축 시기	관 계 인		
						주 소	성 명	관 리 번호
1	관 리 실	함 석(조립식)	18.1	m ²				
2	관 리 실	함 석(조립식)	6.4	m ²				

6. 거주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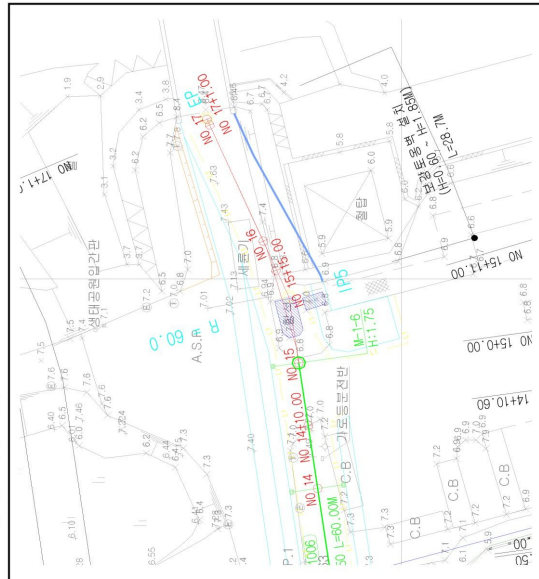
소유자				세입자						
직업	가족명	주거 면적	소유 시기	세구분	상 호	상가주	가족명	상가 면적	입주 시기	연락처

7. 특기사항

※건축물관리대장 유, 무

건축물등기부등본 유, 무

소유자와 거주기간 또는 거주자간 관계



2009년 1월 일

조사자 직 성명 :	(인)
감독관 직 성명 :	(인)
소 유 자 :	(인)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9 - 5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2지구내
소3-2, 소3-5, 소3-6호선)
실시계획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명: 도림2지구내 도로(소3-2호선, 소3-5호선, 소3-6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43) 및 도시개발과(☎032-453-29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12.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도림2지구내 소3-2호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41-1번지 일원
- 도림2지구내 소3-5호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37-19번지 일원
- 도림2지구내 소3-6호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38-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소3-2호선, 소3-5호선, 소3-6호선)
- 명 칭 : 도림2지구내 도로(소3-2호선, 소3-5호선, 소3-6호선) 확장포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 3-2호선 : 폭원(B)=6m, 연장(L)=629m 중 230m
- 소로 3-5호선 : 폭원(B)=6m, 연장(L)=47m
- 소로 3-6호선 : 폭원(B)=6m, 연장(L)=27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있음】

- 당 초 : 2008. 10. 24 ~ 2009. 12. 31
- 변 경 : 2008. 10. 24 ~ 2010.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편 입 용 지 조 서

남동구 도림동

(도림2지구연결도로확포장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잔여면 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의권리	
1	도림동	400-4	도	35	35	0		인천광역시청				
2	도림동	400-5	전	45	45	0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53-8	배정환				
3	도림동	403-2	전	96	96	0	남동구논현동563-3논현주공 apt205-1503	강 순식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563-3	국민은행	근저당	
4	도림동	617	도	27,868	219	27,649		건교부				
5	도림동	402-7	임	441	441	0	인천 간석동 76-19	고 태복				
6	도림동	402-10	임	399	399	0	인천 남구 주안동 1454-40	김 진열				
7	도림동	402-12	임	135	135	0	남동구 논현동 111-91	이 영준				
8	도림동	402-8	임	40	40	0	도림동 95-1	정 명환				
9	도림동	신65-5	임	1,807	1,807	0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1	이 문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임차권	
10	도림동	418-7	답	455	455	0	도림동 439	이문주				
11	도림동	430-6	답	12	12	0	도림동 439	이 문주				
소 계				31,333	3,684	27,649						

지 장 물 조 서

[illegible]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9-6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동법 제32조 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1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5,240.9	—	155,240.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376.0	—	114,376.0	73.7	
제3종일반주거지역	40,864.9	—	40,864.9	26.3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 로

가. 도로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 정	37	9,609 (4,226)	43,337.9	1	5,490 (658)	11,284.9	15	2,483 (1,989)	16,197.0	21	1,636 (1,579)	15,856.0
	변 경	37	9,609 (4,226)	43,303.9	1	5,490 (658)	11,284.9	14	2,483 (1,939)	15,800.0	22	1,636 (1,629)	16,219.0
대 로	기 정	1	5,490 (658)	11,284.9	1	5,490 (658)	11,284.9	—	—	—	—	—	—
중 로	기 정	3	864	11,689.4	—	—	—	—	—	—	3	864	11,689.4
소 로	기 정	33	3,255 (2,074)	20,363.6	—	—	—	15	2,483 (1,989)	16,197.0	18	772 (715)	4,166.6
	변 경	33	3,255 (2,704)	20,329.6	—	—	—	14	2,483 (1,939)	15,800.0	19	772 (765)	4,529.6

※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1	25	보조 간선	5,490 (658)	고잔동 광3-5 (도림동 191-6도)	도림동 대1-20 (도림동 358-8도)	일반 도로		인고 제1996-139호	
기정	중로	3	132	12	국지 도로	584	광 3-6	대 3-21	일반 도로		인고 제1997-227호	
기정	중로	3	133	12	국지 도로	90	대 3-21	중 3-132	일반 도로		인고 제1997-227호	
기정	중로	3	182	12	국지 도로	190	광 3-6	소 2-1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508 (216)	대 3-21	중 3-182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96	중 3-182	소 2-1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03	중 3-132	소 2-4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84	소 2-3	소 3-12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76	소 2-3	소 2-4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45	중 3-132	소 2-8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변경	소로	2	6	8	국지 도로	179	중 3-132	소 2-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02 (54)	소 2-6	도림동 317도 (도림동 산35-7)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84	중 3-132	소 2-7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폐지	소로	2	8	8	국지 도로	84	중 3-132	소 2-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70	중 3-132	중 3-133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98	소 2-12	소 3-11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53	중 3-132	소 2-10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90	대 3-21	중 3-132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159	소 2-12	소 3-14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55	중 3-132	소 2-13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60 (106)	중 3-132	소 3-15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66	중 3-132	도림동 617도	일반 도로		인고 제1997-227호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35	중 3-132	도림동 363-12전	일반 도로		인고 제1997-227호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28	중 3-132	도림동 365-6도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209	소 2-1	소 2-1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96	소 3-4	소 3-4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60 (103)	대 3-21	소 2-1	일반 도로		남동구고시 제2004-6호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26	소 3-13	소 2-4	일반 도로		남동구고시 제2004-6호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13	대 3-21	소 2-10	보행자 전용도 로		남동구고시 제2004-6호	
기정	소로	3	9	4	특수 도로	16	대 3-21	소 2-13	보행자 전용도 로		남동구고시 제2004-6호	
기정	소로	3	10	4	특수 도로	24	소 2-1	소 3-5	보행자 전용도 로		남동구고시 제2004-6호	
기정	소로	3	11	4	특수 도로	25	소 3-4	소 3-5	보행자 전용도 로		남동구고시 제2004-6호	
기정	소로	3	12	4	특수 도로	15	대 3-21	소 2-4	보행자 전용도 로		남동구고시 제2004-6호	
기정	소로	3	13	4	특수 도로	12	중 3-133	소 2-4	보행자 전용도 로		남동구고시 제2004-6호	

※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4	4	특수 도로	10	중 3-132	소 2-13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3	15	4	특수 도로	10	중 3-132	소 2-15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2000-113호	
기정	소로	3	16	4	특수 도로	10	광 3-6	소 2-1	보행자 전용도로		남동구고시 제2004-6호	
기정	소로	3	17	4	특수 도로	7	광 3-6	소 2-4	보행자 전용도로		남동구고시 제2004-6호	
기정	소로	3	18	4	특수 도로	10	광 3-6	소 2-4	보행자 전용도로		남동구고시 제2004-6호	
신설	소로	3	19	6	국지 도로	50	소 2-6	소 2-7	일반 도로			

다.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8	-	○도로 폐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에 따라 도로 폭원 축소로 인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폐지
-	소로3-19	○도로 신설 -폭원 : 6m, 연장 : 50m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에 따라 도로 폭원 축소로 인한 규모 변경에 따른 신설
소로2-6	소로2-6	○연장 변경 -연장 : 145m → 179m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에 따라 소 2-8호선 폐지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2. 주 차 장 : 변경없음

가.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도립 1 주차장	도립동 237전	400	-	400	남동구고시 제2004-6호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정	2	도립 2 주차장	도립동 252-5대	550	-	550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계			2개소	950	-	950		

3. 공 원 : 변경없음

가.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도림 1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도림동 산37-1임	2,365.6	-	2,365.6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	도림 2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도림동 247-1임	1,540.0	-	1,540.0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	도림 3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도림동 252-5대	1,500.0	-	1,500.0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4	도림 4 소공원	소공원	도림동 616-5구	66.4	-	66.4	인고 제2009-1047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5	도림 5 소공원	소공원	도림동 370-8도	131.3	-	131.3	인고 제2009-1047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6	도림 6 소공원	소공원	도림동 365-8전	195.8	-	195.8	인고 제2009-1047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계				6 개소	5,799.1	-	5,799.1		

4. 녹 지 : 변경없음

가.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도림 1호 녹지	완충 녹지	도림동 산37-4임	659.5	-	659.5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	도림 2호 녹지	완충 녹지	도림동 236-3전	671.3	-	671.3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	도림 3호 녹지	완충 녹지	도림동 195-6답	543.4	-	543.4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4	도림 4호 녹지	완충 녹지	도림동 산37-7임	817.6	-	817.6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5	도림 5호 녹지	완충 녹지	도림동 246-3답	222.0	-	222.0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6	도림 6호 녹지	완충 녹지	도림동 296-6대	104.4	-	104.4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7	도림 7호 녹지	완충 녹지	도림동 297답	143.4	-	143.4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8	도림 8호 녹지	완충 녹지	도림동 296-5답	46.2	-	46.2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9	도림 9호 녹지	완충 녹지	도림동 302-2전	33.0	-	33.0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0	도림 10호 녹지	완충 녹지	도림동 246-4대	810.0	-	810.0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1	도림 11호 녹지	완충 녹지	도림동 192-5답	534.3	-	534.3	인고 제2000-113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2	도림 12호 녹지	경관 녹지	도림동 산37-8임	120.8	-	120.8	인고 제2009-1047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계					4,705.9	-	4,705.9		

5. 공공청사 : 변 경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공청사	파출소	도림동 247-29입	404.9	감)404.9	-	남동구고시 제2004-6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청사	-공공청사 폐지	-도림동 수산파출소에서 지구대로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현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이전 및 활용계획 불필요

Ⅱ. 도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도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도림구역	남동구 도림동 249번지 일원	155,240.9	인고 제2000-113호 (2000. 6. 30)	

나.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5,240.9	-	155,240.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376.0	-	114,376.0	73.7	
제3종일반주거지역	40,864.9	-	40,864.9	26.3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동주택용지(A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37	16,377.9	1	1,475.8	
		2	2,492.3	
		3	877.7	
		4	317.0	
		5	143.5	
		6	176.0	
		7	186.0	
		8	181.5	
		9	189.6	
		10	167.0	
		11	165.2	
		12	174.2	
		13	2,275.1	
		14	608.8	
		15	652.2	
		16	381.7	
		17	659.2	
		18	396.5	
		19	446.5	
		20	297.3	
		21	297.3	
		22	3,396.6	
		23	420.9	환지도로
36	2,541.5	1	293.8	
		2	150.0	
		3	170.0	
		4	304.8	
		5	336.5	
		6	225.6	
		7	435.4	
		8	625.4	환지도로
32	16,143.4	1	530.8	공개공지 일부포함
		2	974.0	공개공지 일부포함
		3	7,094.1	공개공지 일부포함
		4	7,217.1	
		5	327.4	공개공지 일부포함

나. 주상복합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구 번호	기				가구 번호	변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 치	면 적(㎡)	
10	2,016.3	1	226.9		10	2,421.2	1	226.9	
		2	535.6				2	535.6	
		3-1	42.2				3-1	42.2	
		4	384.0				4	384.0	
		5	182.9				5	182.9	
		6	281.7				6	281.7	
		9	363.0				8	404.9	공공청사 폐지로 인한 용도변경
							9	363.0	
12	1,232.0	1	238.1		12	1,232.0	1	238.1	
		2	238.0				2	238.0	
		3	284.2				3	284.2	
		4	304.2				4	304.2	
		5	167.5				5	167.5	
15	2,759.0	7	200.8		15	2,759.0	7	200.8	
		8	188.3				8	188.3	
		9	1,115.8				9	1,115.8	
		10	635.2				10	635.2	
		11	618.9				11	618.9	
21	1,320.7	1	360.8		21	1,320.7	1	360.8	
		2	168.0				2	168.0	
		3	146.8				3	146.8	
		5	157.7				5	157.7	
		6	138.6				6	138.6	
		7	120.0				7	120.0	
		8	228.8				8	228.8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25	1,285.1	1	294.4	
		2	312.5	
		3	245.2	
		4	199.0	
		5	234.0	
28	1,127.5	1	271.7	
		2	246.6	
		3	214.9	
		4	394.3	
31	693.8	1	199.3	
		2	244.3	
		3	117.0	
		4	133.2	

■ 주상복합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10	10	8	-가구면적 증가 및 획지용도변경 8LT(404.9㎡) 주상복합용지 추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획지용도 변경(공공청사용지) → 주상복합용지

다. 다세대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11	1,615.1	3	322.8	천우주택
		4	506.5	천우주택
		5	443.0	천우주택
		6	342.8	천우주택
18	3,835.1	3	381.9	오복빌라
		4	448.6	오복빌라
		7	380.1	오복빌라
		8	427.8	오복빌라
		9	443.9	오복빌라
		10	435.8	오복빌라
		11	476.1	오복빌라
		15	224.2	오복빌라
		16	193.4	상기존차건물
22	4,079.9	17	423.3	환지도로
		1	210.5	유치원존차건물
		2	363.6	오복빌라
		3	297.1	오복빌라
		4	435.3	오복빌라
		5	333.8	오복빌라
		6	552.5	오복빌라
		7	492.2	오복빌라
		8	500.3	오복빌라
		9	503.4	오복빌라
23	470.6	24	391.2	환지도로
		6	183.7	태우빌라
		7	286.9	태우빌라

라. 단독주택용지(D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1	1,167.0	1	263.8	
		2	223.9	
		3	221.2	
		4	224.9	
		5	233.2	
2	1,016.0	1	240.8	
		2	240.7	
		3	269.0	
		4	265.5	
3	1,426.5	1	156.8	
		2	189.7	
		3	180.0	
		4	180.0	
		5	180.0	
		6	180.0	
		7	180.0	
		8	180.0	
4	905.9	1	221.8	
		2	222.1	
		3	231.2	
		4	230.8	
5	2,032.8	1	171.2	
		2	144.0	
		3	185.6	
		4	179.2	
		5	226.8	
		6	255.7	
		7	199.8	
		8	166.4	
		9	214.6	
		10	289.5	
6	3,101.9	1	278.0	
		2	149.8	
		3	151.0	
		4	271.4	
		5	325.0	
		6	268.2	
		7	276.8	
		8	199.7	
		9	346.0	
		10	123.6	
		11	133.1	
		12	131.8	
		13	237.7	
		14	93.7	
		15	49.3	환지도로
		16	66.8	환지도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7	492.5	6	235.0	
		7	257.5	
8	1,030.4	1	231.1	
		2	216.4	
		3	315.1	
		4	267.8	
9	2,382.6	1	95.0	
		2	123.7	
		3	183.4	
		4	130.5	
		5	158.0	
		6	141.1	
		7	147.8	
		8	125.8	
		9	161.7	
		10	155.9	
9	2,382.6	11	161.0	
		12	156.8	
		13	159.6	
		14	324.9	
		15	157.4	
11	1,578.4	2	291.6	
		7	257.8	
		9	279.6	
		10	292.2	
		11	171.0	
		12	286.2	환지도로
13	3,434.2	1	215.8	
		2	160.3	
		3	475.7	경노당
		5	127.2	
		6	171.3	
		7	170.9	
		8	172.1	
		9	142.6	
		10	204.5	
		11	185.0	
		12	210.7	
		13	235.9	
		14	159.6	
		15	150.5	
		16	149.0	
		17	165.8	
		18	171.6	
		19	165.7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14	2,371.6	1	180.0	
		2	159.2	
		3	268.8	
		4	208.5	
		5	239.6	
		6	181.8	
		7	299.6	
		8	243.5	
		9	198.6	
		10	187.7	
		12	204.3	
15	1,455.0	1	168.9	
		2	261.5	
		3	372.2	
		4	200.0	
		5	219.0	
		6	233.4	
17	1,788.0	1	189.1	
		2	164.4	
		3	204.6	
		4	160.2	
		5	204.6	
		6	260.4	
		7	291.4	
		8	160.2	
		9	153.1	
18	1,649.7	1	221.7	
		2	136.7	
		5	160.9	
		6	160.1	
		12	418.1	
		13	320.2	
		14	232.0	
19	2,226.0	1	484.2	
		2	170.0	
		3	160.0	
		4	130.0	
		5	175.4	
		6	177.3	
		7	145.6	
		8	171.8	
		9	180.0	
		10	285.5	
		11	146.2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20	2,431.7	1	357.6	
		2	402.8	
		5	163.1	
		6	525.5	
		7	145.4	
		8	165.6	
		9	260.4	
		10	185.3	
		11	226.0	
22	1,587.4	10	318.5	
		11	370.3	
		18	219.1	
		19	166.0	
		20	188.7	
		21	152.6	
		23	172.2	
23	1,660.7	1	518.3	
		2	210.7	
		3	206.1	
		4	176.7	
		5	190.5	
		9	165.2	
		10	193.2	
24	2,357.0	1	97.2	
		2	227.9	상가존치건물
		3	164.0	
		4	177.5	
		5	201.4	
		6	189.4	
		7	164.8	
		8	232.6	
		9	159.8	
		10	209.7	
		11	255.3	
		12	133.4	
		13	144.0	
26	612.3	1	184.7	
		2	149.6	
		3	161.8	
		4	116.2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27	2,269.2	1	220.9	
		2	217.3	
		3	227.2	
		4	229.0	
		5	217.2	
		6	224.3	
		7	217.2	
		8	229.5	
		9	205.2	
		10	281.4	
29	1,331.6	1	227.8	
		2	129.1	
		3	199.5	
		4	235.0	
		5	254.7	
		6	285.5	
30	1,859.4	1	214.0	
		2	301.6	
		3	209.9	
		4	326.6	
		5	255.2	
		6	135.8	
		7	128.8	
		8	145.6	
		9	141.9	

마. 공공청사용지(E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기				정	가구 번호	변				경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10	404.9	8	404.9	파출소	-	-	-	-	획지용도변경		

■ 공공청사용지(E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10	10	8	-획지용도 변경 파출소 (404.9㎡) → 주상복합 용지(B용도)	-도림동 수산파출소에서 지구대로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현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이전 및 활용계획 불필요

바. 종교용지(F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7	1,472.2	1	305.6	공동개발
		2	332.2	공동개발
		3	424.7	공동개발
		4	364.7	공동개발
22	905.2	12	905.2	

4.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동주택용지(A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32BL(1~5LT) 37BL(1~23LT) 36BL(1~8LT)	용 도	○ 별표1의 A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A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25% 이하
		용 적 륜	○ 220% 이하 (단, 공동개발시 230%이하, 36BL과 37BL 공동개발을 전제로 37BL 용적률을 230%에서 250%이하로 상향조정)
		높 이	○ 19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 축 한 계 선	○ 지 정

나. 주상복합용지(B용도) : 변경

【 기 정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	10BL(1~6, 9LT), 12BL(1~5LT) 15BL(7~11LT) 21BL(1~8LT), 25BL(1~5LT) 28BL(1~4LT), 31BL(1~4LT)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B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B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B
		형	태	○ 별표3의 B
		색	채	○ 별표4의 B
		건 축 한 계 선		○25m 도로변 : 2m ○12m 도로변 : 1m

【 변 경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	10BL(1~6, 8, 9LT), 12BL(1~5LT) 15BL(7~11LT) 21BL(1~8LT), 25BL(1~5LT) 28BL(1~4LT), 31BL(1~4LT)	용 도	허용 용도	○ 별표1의 B의 허용용도
			불허 용도	○ 별표1의 B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B
		형	태	○ 별표3의 B
		색	채	○ 별표4의 B
		건 축 한 계 선		○25m 도로변 : 2m ○12m 도로변 : 1m

※ 획지용도 변경(공공청사 → 주상복합용도)에 따른 10BL 8LT 추가

다. 다세대주택용지(C용도) : 변경없음

다. 다세대주택용지(C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	11BL(3~6LT) 18BL(3, 4, 7~11, 15LT) 22BL(2~9LT) 23BL(6, 7LT)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C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C
		형	태		○ 별표3의 C
		색	채		○ 별표4의 C
		건 축 한 계 선		○ 지 정	
C	18BL(16LT) 22BL(1LT)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C의 허용용도, B의 근린생활 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C의 불허용도, B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C
		형	태		○ 별표3의 C
		색	채		○ 별표4의 C
		건 축 한 계 선		○ 지 정	

라. 단독주택용지(D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	1BL(1~5LT), 2BL(1~4LT) 3BL(1~8LT), 4BL(1~4LT) 5BL(1~10LT), 6BL(1~14LT) 7BL(6, 7LT), 8BL(1~4LT) 9BL(1~15LT) 11BL(2, 7, 9~11LT) 13BL(1~3, 5~19LT) 14BL(1~10, 12LT) 15BL(1~6LT), 17BL(1~9LT) 18BL(1, 2, 5, 6, 12~14LT) 19BL(1~11LT), 20BL(1~11LT) 22BL(10, 11, 18~21, 23LT), 23BL(1~5, 9, 10LT), 24BL(1, 3~13LT), 26BL(1~4LT), 27BL(1~10LT), 29BL(1~6LT), 30BL(1~9LT)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D
		형	태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 축 한 계 선		○ 12m도로변 : 1m
		D	24BL(2LT)	용 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의 불허용도, B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D
형	태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 축 한 계 선				-

마. 공공청사용지(E용도) - 삭 제

※ 토지이용 변경(공공청사 → 주상복합용도)에 결정조서 삭제

바. 종교용지(F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F	7BL(1~4LT) 22BL(12LT)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F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F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건축물 높이 15m 이하
		배	치	○ 별표2의 F
		형	태	○ 별표3의 F
		색	채	○ 별표4의 F
		건 축 한 계 선		○ 12m 도로변 : 1m

■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배치,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B 주상 복합 용지	○가구번호 변경 -10BL 1 ~ 6, 9LT → 1 ~ 6, 8, 9LT	-10BL 8LT의 획지용도 변경 (공공청사→주상복합)에 따른 획지 추가
E 공공 청사 용지	○공공청사 결정조서 삭제	-토지이용 변경(공공청사 → 주상복합)에 따른 결정조서 삭제

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A	공 공 조 경	○중로이상에 접한 공동주택용지변에 폭 5m의 내부조경을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 단, 공동주택 진출입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부분 제외 ○공개공지를 지정하여 주변과 조화 있는 단지 조성 유도 (면적 : 2,290㎡)
	대지내 조 경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 식재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 또는 남동구 구화인 개나리의 식재를 권장 ○지상주차장이 넓을 경우,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식재

6. 건축물에 대한 용도·배치·형태·색채·대지내공지·차량및주차·보행동선·
단지내시설물배치에 관한 계획 -별표 참조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비 고
A	○주택법에 의한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부대시설,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단, 기존이지만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의료복지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단, 기존 다세대주택 제외)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기정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비 고
C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부대시설 [단, 단지내 기존 존치 상가건물(18BL 16LT) 및 유치원 건물(22BL 1LT)은 B용도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단, 기존 다세대주택 제외)	
D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1층에 한함 : 단, 변전소, 정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단, 기존의 존치 상가건물(24BL 2LT)은 B용도 적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E	○ 공공청사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F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 1) 대지분할 및 획지합병의 경우 공동주차 통로는 차량출입금지구간을 피하여 적정한 위치에 선정 가능
- 2) 단, 1개의 획지가 2개의 용도에 걸쳐있는 경우 허용용도는 상위 용도 적용
- 3) 종교용지(F용도)에 대하여는 공동개발 허용
- 4) 36블럭과 37블럭 공동개발을 전제로 37블럭에 한하여 용적률을 230%이하에서 250%이하로 상향조정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변경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비 고
A	○ 주택법에 의한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부대시설, 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단, 기존입지만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중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 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단, 기존 다세대주택 제외)	
C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부대시설 [단, 단지내 기존 존치 상가건물(18BL 16LT) 및 유치원건물(22BL 1LT)은 B용도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단, 기존 다세대주택 제외)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비 고
D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1층에 한함 : 단, 변전소, 정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및 건축자재 관련 시설 제외) 단, 기존의 존치 상가건물(24BL 2LT)은 B용도 적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단, 다음 항목의 시설은 1층에 한하여 허용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다. 서점 바. 금융업소·사무소·출판사·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및 소개업소등 바닥면적 500㎡ 미만 사. 세탁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표 참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중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E	○ 삭제		
F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중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 1) 대지분할 및 획지합병의 경우 공동주차 통로는 차량출입금지구

간을 피하여 적정한 위치에 선정 가능

- 2) 단, 1개의 획지가 2개의 용도에 걸쳐있는 경우 허용용도는 상위 용도 적용
- 3) 종교용지(F용도)에 대하여는 공동개발 허용
- 4) 36블럭과 37블럭 공동개발을 전제로 37블럭에 한하여 용적률을 230%이하에서 250%이하로 상향조정

[별표 2]

건축물 배치 계획-기정

용 도	도면번호	건 축 물 의 배 치
공 동 주 택 용 지	A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정남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적용(단, 기존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단조로운 경관을 탈피하기 위해 단지내 층수 변화를 두어 경관 및 식별성 제고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방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주 상 복 합 용 지	B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정남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적용(단, 기존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중로(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3-21호선변에 접한 획지는 근린생활시설용도에 적합한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 2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 12m 도로에 접한 획지는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단 독 및 다세대 주 택 종 교 용 지	C D F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정남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적용(단, 기존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중로(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12m 도로에 접한 획지는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 획지가 2켜로 구성된 가구의 획지 경계부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을 활용한 녹지대 조성을 유도 ○ 12m 이상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을 다르도록 함) ○ 가각에 접한 대지내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용 도	도면번호	건 축 물 의 배 치
공 공 청 사	E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25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건축한계선:2m)

건축물 배치 계획-변경

용 도	도면번호	건 축 물 의 배
공 동 주 택 용 지	A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정남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적용(단, 기존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할 수 있음)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단조로운 경관을 탈피하기 위해 단지내 층수 변화를 두어 경관 및 식별성 제고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방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주 상 복 합 용 지	B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적용(단, 기존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할 수 있음) ○중로(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3-21호선변에 접한 획지는 근린생활시설용도에 적합한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 2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 12m 도로에 접한 획지는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단 독 및 다세대 주 택 중 교 용 지	C D F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적용(단, 기존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할 수 있음)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중로(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12m 도로에 접한 획지는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획지가 2켜로 구성된 가구의 획지 경계부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을 활용한 녹지대 조성을 유도 ○12m 이상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을 다르도록 함) ○가각에 접한 대지내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별표 3]

건축물 형태 계획

용 도	도면번호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공 동 주 택 용 지	A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 주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주 상 복 합 용 지	B	○12m이상 도로에 저하는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단 독 및 다세대 주 택, 종 교 용 지	C D F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옥상부분의 옥외광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별표 4]

건축물 색채 계획

용 도	도면번호	건축물의 색채
공 동 주 택 용 지	A	○구역의 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 또는 녹색인 하늘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주변의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베이지, 연한연두, 연한노랑, 연한하늘 등의 부담 없고 친근한 보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주 상 복 합 용 지	B	○주활동축으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강조색은 가능)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단 독 및 다세대 주 택, 종 교 용 지	C D F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 색채는 파랑, 회색, 녹색, 적황색 계통을 위주로 권장

※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 및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 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기정

도면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A	공 조	○ 중로이상에 접한 공동주택용지변에 폭 5m의 내부조경을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 단, 공동주택 진출입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부분 제외 ○ 공개공지를 지정하여 주변과 조화 있는 단지조성 유도 (면적 : 2,290㎡)
	대지내 조 경	○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 식재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 또는 구화인 개나리 식재를 권장 ○ 지상주차장이 넓은 경우,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식재
B C D E F	전 면 공 지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도로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내 조 경	○ 건축면적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기준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 - 단,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 또는 남동구 구화인 개나리 식재를 권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

도면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A	공 조	- 중로이상에 접한 공동주택용지변에 폭 5m의 내부조경을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 단, 공동주택 진출입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부분 제외 - 공개공지를 지정하여 주변과 조화 있는 단지조성 유도 (면적 : 2,290㎡)
	대지내 조 경	-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 식재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 또는 구화인 개나리 식재를 권장 - 지상주차장이 넓은 경우,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식재
B C D F	전 공 면 지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도로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 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 접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등 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내 조 경	- 건축면적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기준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 - 단,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 또는 남동구 구화인 개나리 식재를 권장

[별표 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용 도	도면 번호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공 동 주 택 용 지	A	차 량 동 선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 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하며, 교차 로 측단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와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함
		주 차 시 설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 1대/85㎡, 85㎡초과 : 1대/70㎡)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
주 상 복 합 용 지	B	차 량 동 선	대도-2호선변 근린생활시설 전면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단,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용도와 이면도로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획지는 제외)
		주 차 시 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함
단 독 및 다세대 주 택, 종 교 용 지	C D F	차 량 동 선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결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획지 2개소당 1개소의 공동주차통로의 설치를 유도하며 획지 1개소당 최소 3m이 상 확보(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 차 시 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함

[별표 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 ● ●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인접대지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 조성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이 장애인 램프 설치를 고려하여 대지의 높이와 주출입구의 높이차를 15cm 이내로 권장

[별표 8]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구 분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가 로 시설물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규모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보행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시각적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하여 가로 장치물 설계
식 재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남동구의 구목인 벚나무 등의 식재 유도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이상 띄워서 식재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
포 장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보 도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의 블록 사용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연 석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 명 설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결정하여 설치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 타 항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 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안노안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GFP 기준 등)

구 분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옥 외 광 고 물 계 획	표시 (설치) 방향	○ 건축한계선밖으로 돌출금지 및 이동간판 사용금지 ○ 옥상간판 부착금지, 돌출간판 부착금지 ○ 가로형 간판은 건물정면 2층 이하에 설치하되 1개소 업소에 1개의 간판만 허용 (곡각 지점에는 2개 허용) ○ 간판 재질 중 후렉스의 사용을 제한함 (단, 로고 및 픽토그램에 한하여 허용) ○ 가로형 간판의 경우 한 건물 내 같은 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단, 입체형, 조각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건물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가로형 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세로(벽면)폭의 80% 이내로 함 (다만, 층간 벽면 높이가 1m미만인 경우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80cm이하로 함) ○ 창문이용광고물 및 세로형 간판부착금지 (다만, 세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건물 정면의 주 출입구 기둥 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 ○ 개별지주이용 광고물 설치를 금하고, 1개 건물당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지주이용광고물 허용(종합사인보드) ○ 현수막, 벽보부착은 일체 금지 (다만, 지정 벽보관 게시대 설치만 허용) ○ 주상복합용지에 한해서만 네온 및 전광류 사용허용 ○ 선전탑 아취 광고물은 사안에 따라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 공연간판은 공연 등을 위한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되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건축물 정면에 1개소만 추가로 허용 ○ 공공시설 이용광고는 허용 ○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방향에 접하는 쪽으로 광고물 표시금지
	색채	○ 광고물의 색채중 적색류와 흑색류의 표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
	치수	○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인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름
	수량	○ 업소당 1개이하로 설치 (곡각지점은 2개소 허용)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인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름

Ⅲ. 관계도서(게재생략)

1.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S=1/1,000)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S=1/1,000)